

Understanding and Trends in the Oper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System

자원순환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와 동향

I.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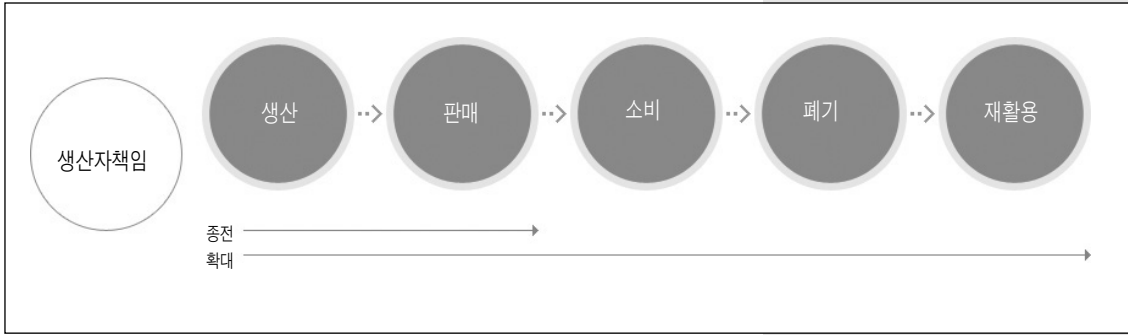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사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는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림 1] 생산자 책임 범위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 주체별 역할

[표 1] 주요 주체와 역할

주체	역할
소비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 분리수거 업무 철저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 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를 산정 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 주체 간 갈등 조정 및 해소

3. 업무의 흐름

[그림 2] 생산자 책임 범위의 확대



4.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표 2] 의무대상과 면제 대상

구분	의무대상	면제 대상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제조업자	매출액	10억 미만	10억 미만	10억 미만
			출고량	4톤 미만	0.8톤 미만	10톤 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 미만	3억 미만	3억 미만
			수입량	1톤 미만	0.3톤 미만	3톤 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제조업자	분류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시행령 제18조 제11호)	기타 면제 기준 없음
			매출액	10억 미만		
		수입업자	출고량	10톤 미만		
			수입액	3억 미만		
출고량	3톤 미만					

-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5.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9개 제품군(운할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 합성수지 재질의 제품)이다.

[표 3] EPR대상 제품·포장재 구분

구분	EPR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지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운할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운할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운할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되는 운할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운할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운할유 바.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운할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 제품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 · 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II. 분리배출표시제도

1. 제도안내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1-1.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표 4]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구분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제10조 1항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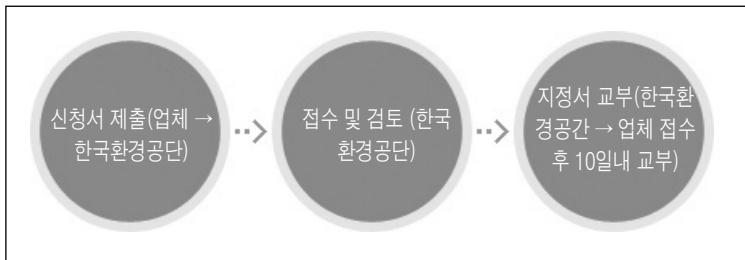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관련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림 3] 지정승인절차



※ 지정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1. 신청서 제출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함) 또는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
 -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한다.
-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

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

- 지정신청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다.

2-3. 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이후 10일 이내 지정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업체에 교부한다.

3.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관련 근거: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표 5] 기준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방법

기준	방법
기준일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표시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표시위치	제품 ·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형태 · 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밀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다중포장재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 · 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수입제품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무라벨 페트병 (먹는 샘물)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 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소포장지의 결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결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분리배출표시 적용 예외

[관련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표 6] 적용 예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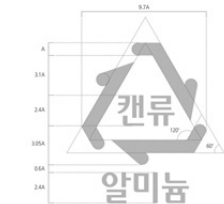

구분	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 트레이류)', '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 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p>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5. 분리배출표시 도안

5-1. 도안 작도요령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

[표 7] 예시 및 작도요령

유형	예시	작도요령
일반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 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 심벌마크 가로 폭은 9.7A로 한다.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 재질 '철'은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

- '도포·첩합 등'이란 영 제18조 제1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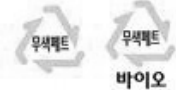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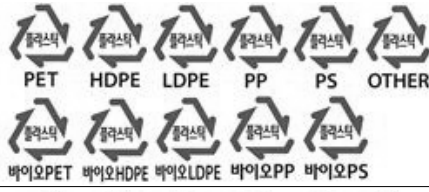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다. 페트병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5-2.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표 8] 도안 예시

구분		도안예시
합성수지	무색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금속	캔류	
종이	종이	
	일반팩 (살균팩)	
	멸균팩	
유리	유리	
도포 · 첩합 등		

※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 · 흑백 등 인쇄 가능

※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 · 트레이형은 '플라스틱'으로, 필름 · 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한다.

※ OTHER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 (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 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5-3. 분리배출 일괄 표시

[표 9] 일괄표시 도안

	구성	기본도안	일괄표시
예시	주요부분 : 무색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6.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표 10] 연락처 및 관할 지역

관할본부	전화번호	관할지역
수도권동부환경본부	031-590-0651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수도권서부환경본부	02-3153-0570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051-366-3770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053-580-7552, 45, 41, 37, 05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042-939-2335	대전, 충남, 세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062-949-0747, 0749, 0304	광주, 전남
강원환경본부	033-240-9550	강원
전북환경본부	063-279-0836	전북
충북지사	043-219-6442~4,7	충북
제주지사	064-725-6542	제주

※ 수도권동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관할구역을 유의하여야 한다.

III.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1.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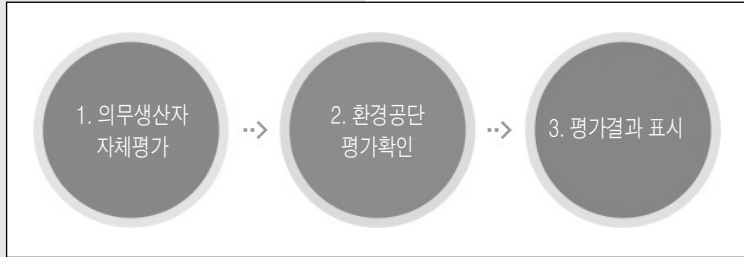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019.12.25 시행]

2. 적용 대상 및 평가 대상

- 적용 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 · 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

[그림 4] 평가 및 표시 과정



※ 지정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4.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 시기: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10일

· 제출처: 전산시스템(www.iepr.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5.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 대상임.

[표 11] 등급도안 예시

<p>●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 표시 	<p>●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캔류 철 재활용 우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플라스틱 PP 뚜껑:HDPE 재활용 보통</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재활용 우수 캔류 철</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랩 : PVC 재활용 어려움</p>  <p>1 2 3 4 5 6 7 8 9 1 2 3 랩 : PVC 재활용 어려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랩 : PVC 재활용 어려움</p>  <p>1 2 3 4 5 6 7 랩 : PVC 재활용 어려움</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그림 5] 등급 평가 및 표시 절차



[표 11] 관할지역 및 담당부서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1)590-0651~4, 0656, 067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1~9, 5404~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5, 3770~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 7545, 755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42)939-2338~9, 2343, 23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304, 0312, 0745, 0747~8
강원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3)240-9542, 9547
충청북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3, 4, 7
전라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	(032)590-4161~6

IV. 자원순환보증금제도

[그림 6] 업무흐름도



[표 13]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취급수수료(~22.2.6.)			취급수수료(22.2.7.~)		
		17년 이전	17년 이후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30원	19원	11원	32원	20원	12원
	190ml이상 400ml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34원	22원	12원	36원	23원	13원
	1,000ml 이상	100~300원/개	350원/개	33원	21원	12원	38원	24원	14원

- 기타 주류(400ml 이상~1.000ml 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 22원/소매 13원) 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흐름과 동일하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 자원순환보증금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빈 용기의 회수를 향상을 위한 홍보
 - 빈 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 빈 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1.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2. 자원순환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 제4조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